

제 544 호

1976.3.19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편집장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말간실

전화 75-6090

# 시 보

## 차 례

◎조	례		
호	제 1022 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심의회조례.....	3
◎규	칙		
제	1559 호	서울특별시립운동장 직제중개정규칙.....	4
제	1560 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중 개정규칙.....	5
제	1561 호	광고물등단속법 시행규칙중 개정규칙.....	6
◎훈	령		
제	439 호	서울특별시구의 공공시설관탈에 관한규정.....	7
◎교	시		
제	46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 계획인가.....	13
제	47 호	도시계획(일단외주택지조성사업) 결정 및 지적승인.....	15
제	48 호	도시계획특정가구 정비지구변경(폐계) 지적승인.....	16
제	50 호	도시계획시설(공용외청사) 결정 및 지적승인.....	17
제	51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 계획인가.....	17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제 52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일부변경및지적승인	18
제 53 호	서울도시계획 (공원) 결정및일부변경	19
제 54 호	서울특별시 광고물게시 시설금지지역고시	20
제 57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및지적승인	22
◎공 고		
제 55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23
제 57 호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환지계획 일부변경공람	24
제 58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24
제 59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32
제 60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지정 업체대체 지정공고	34
제 62 호	영동새 2 지구 (추가) 환지 계획공람공고	34
제 95 호	(영등포구공고) : 공인신조공고	35
◎예 규		
제 321 호	서울특별시 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 사무처리요령중 개정요령	37
제 322 호	서울특별시 직업안정업무 처리요강중 개정요강	37
제 323 호	긴급자동차 사무취급요강중 개정규정	38
◎사 령		38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회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6년 3월 19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1022 호

서울특별시공유재산심의회조례

제 1 조 ( 목적 )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 56 조의 3 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회 ( 이하 " 심의회 " 라 한다 )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심의회의 구성 ) ① 심의회는 위원장 1 인과 위원약간인으로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계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재과장, 예산담당관, 세정과장, 도시행정과장, 도시계획과장, 주택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경리과장이

된다.

제 3 조 ( 심의회의기능 ) 심의회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산의교환 및 기부채납의 적정여부
2. 재산의취득, 처분 및 교환가격의 결정
3.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 사용년한 사정
4. 대부로 및 임대료 사정
5. 재산의 용도변경, 처지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

제 4 조 ( 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교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 회의 ) ① 심의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6 조 ( 간 사 및 서 기 ) ① 심 의 회 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관재과 재산관리계장이 되고 서기는 관재과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서무에 종사한다.

제 7 조 ( 심 의 록 작성 ) 회의록 개최하였을 때에는 심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심의록에는 참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① ( 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 폐지규칙 ) 서울특별시 규칙제1331호 (1973.11.24) 서울특별시 시유재산 심의회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 ( 적용 ) 공유재산 심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와 다른조례와 규칙등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립운동장 직제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6년 3월 19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559 호

서울특별시립운동장직제중 개정규칙 (안)

서울특별시립운동장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중 " 이 규정은 " 을 이 규칙 은 " 으로 한다.

제 4 조 제 2 항 제 1 호 중 바목을 삭제하고, 제 2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부속시설 (시당, 집포, 매점)의 운영관리

제 5 조 제 2 항 중 제 1 호 및 제 2 호 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 설 계

가. 토목 건축물 기타 각종 시설물의 시설, 개량 및 위생, 하수도 보수외 계획, 시공 및 감독과 유지관리

나. 담당관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기 건 계

가. 전기, 통신, 기계, 냉난방, 소화 시설 기타의 부대설비의 시설, 개량 및 보수의 계획, 시공 및 감독과 유지관리

나. 경기용기구 및 용구의 제작 구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중 개정규칙(안)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상 구자준 인

1976년 3월 19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560 호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8 조 제 1 항중 단서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권"을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권 및 기능직내의 전직 임용권"으로 한다.

제 62 조중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고용원 직종, 초급로봉의 한계와 직명은 별표 16 과 같다.

제 109 조중 "과 이하직 승적심사 위원회" 및 동조 제 3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 112 조중 "및 시민이 추천하고, 지하철본부장 표창 대상자는 소장과, 현업기관장 및 시민이 추천한다"를 "및 시민이 추천한다"로 한다.

별표 16 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17 을 삭제한다.

<별표 16>

고용원외직종, 초급호봉의 한계와직명

직 종	초급호봉	직 명
1 종	4 호봉	타자원, 필생, 제도사, 목공, 수위, 난방공, 영화기사, 무대수 운전원, 자동차공, 민원보조원, 시험원, 선로수, 영양사, 전 화교환원, 수리공, 전공, 통신원, 조명원, 감차원, 사진사, 기관공, 기계공, 조절수, 사육원, 대장정리원, 의무원, 간호 보조원, 보안수, 통신수
2 종	2 호봉	소방원, 이용사, 미용사, 재봉사, 소독수, 창고수, 원정원예 사, 경비원, 감시원, 보조, 교도원, 사감, 여객수, 정리수, 청부, 진달부, 세탁부, 수로원, 취사원, 화부, 노인정관리인, 승강기운전원, 매표원, 잡부, 안내원, 직공
3 종	1 호봉	기계공보조원, 영화기사보조원, 자동차공보조원
경노무고용원		급사, 사환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2종 고용원은 1종고봉원으로, 3종 및 4종고봉원은 2종고봉원으로, 5종고봉원은 3종고봉원으로 이규칙에 의하여 각각 임용된것으로 본다.

광고물등 단속법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6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561호

광고물등 단속법시행  
 규칙중 개정규칙

광고물등 단속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제 1호 서식중 ※주 제 3항 제다호를 삭제하고, 제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허가 갱신시에는 신청서류에 구허가증(사본)을 첨부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광고물등으로서 별표 5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금지구역에 설치된 것은 서울특별시규칙 제 1326 호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수, 이진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훈 령

서울특별시 구의 공공시설관할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6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

○ 서울특별시훈령제 439 호

서울특별시구행정구역조절에 관한 규정 개정규정

서울특별시 구행정 구역조절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구의 공공시설관할에 관한 규정(안)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구간경계에 걸쳐있는 공공시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관할청(구맞출장소)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에서의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 그가로, 육교, 터널, 지하도, 교량, 구거, 하천, 녹지대 및 공원으로서 구간행정구역 조절의 대상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 3 조 (관할청지정) 공공시설의 관할청은 별표 1 과 같으며 가로수는 도로 관할청이 관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1. 도 로					
순위	명 칭	위 치	해 당 청	관 할 청	한 계
1	외주로	서소문네거리 - 서대문네거리	중 구 서대문구	서대문구	폭은 건축선까지
2	외주로	서대문네거리 - 무악재	종 로 구 서대문구	서대문구	"
3	청계로	동아일보사 - 조흥은행본점	종 로 구 중 구	종 로 구	"
4	청계로	조흥은행본점 - 마장교	종 로 구 중 구 동대문구 성 동 구	종 로 구 중 구 동대문구 성 동 구	행정구역 관 할구에서 관리
5	난계로	성동중고교 - 청계로	중 구 성 동 구	성 동 구	폭은 건축선까지
6	난계로	보문동7가 - 신설동로타리 - 청 계로	종 로 구 동대문구	동대문구	"
7	충정로	문화방송국 - 서대문로타리	종 로 구 중 구	종 로 구	"
8	만리로	서부역 - 마포구경계	중 구 용 산 구	용 산 구	"
9	안암로	대광중고교 - 안암동로타리 - 종암대교	동대문구 성 북 구	성 북 구	"
10		마장교 - 장안명 - 군자교	동대문구 성 동 구	동대문구	"



순위	명칭	위 치	해당청	관할청	한 계
11	미아로	미아삼거리 - 구송인출장소입구	성 북 구 도 봉 구	도 봉 구	특은 건축선까지
12		미아3거리 - 신장위동	성 북 구 도 봉 구	성 북 구	"
13	신촌로	서소문네거리 - 마포구경계	중 구 서대문구	서대문구	"
14	"	마포구경계 - 동교동로타리	서대문구 마 포 구	서대문구	"
15	연희로	동교동로타리 - 경외선철도	서대문구 아 포 구	서대문구	"
16	대방로	대방동로타리 - 시흥로	영등포구 관 악 구	관 악 구	"
17	시흥로	신대방동 - 독산동로타리	영등포구 관 악 구	영등포구	"
18	남부순 환도로	독산동로타리 - 관악구경계	영등포구 관 악 구	관 악 구	"

2. 교 가 도 로

순위	명 칭	위 치	해당청	관할청	한 계
1	3·1 고가도로	조흥은행본점 - 동대문	종 로 구 중 구	종 로 구	고가도로의전부
2	"	동대문 - 청계로8가	종 로 구 중 구	중 구	"
3	"	청계로9가 - 마장교	동대문구 성 동 구	성 동 구	"
4	아현고가도로	충정로3가 - 북아현동	서대문구 마 포 구	마 포 구	"

3. 육 교					
순위	명 칭	위 치	해당청	관할청	한 제
1	서소문차도육교	중앙일보사앞 - 서대문구청앞	중 구 서대문구	서대문구	육교의 전부
2	서대문차도육교	서대문충정로3가 - 적십자병원앞	종 로 구 중 구 서대문구	서대문구	"
3	신설동차도육교	신설동로타리	종 로 구 동대문구	동대문구	"
4	대방동육교	대방아파트앞	영등포구 관악구	관악구	"
5	대방동육교	서울공고앞	영등포구 관악구	관악구	"
6	고대앞육교	고대앞	동대문구 성북구	성북구	"
7	대광고교앞육교	대광고교앞	동대문구 성북구	동대문구	"
8	신대방동우진아파트앞육교	신대방동우진아파트앞	영등포구 관악구	관악구	"
4. 터 널					
순위	명 칭	위 치	해당청	관할청	한 제
1	삼청터널	삼청동산 2의 1 - 성북동산 25의 1	종 로 구 성북구	종 로 구	북은 건축선까지
2	북악터널	정릉동산 87의 1 - 명창동산 6의 2	종 로 구 성북구	성북구	"
3	남산 1호터널	예장동산 5의 6 - 한남동산 10의 33	중 구 용산구	중 구	"
4	남산 2호터널	장충동 2가산 7의 22 - 용산동 2가 282의 289	중 구 용산구	중 구	"

5. 지 하 도					
순위	명 칭	위 치	해 당 청	관 할 청	한 계
1	독립문지하도	서대문구와 종로구와의 경계	종로구 서대문구	서대문구	지하도의 전부
6. 교 량					
순위	명 칭	위 치	해 당 청	관 할 청	한 계
1	제 1 한강교	용산구와 관악구와의 경계	용산구 관악구	용산구	교량의 전부
2	제 2 한강교	마포구와 영등포구와의 경계	마포구 영등포구	마포구	"
3	제 3 한강교	용산구와 강남구와의 경계	용산구 강남구	용산구	"
4	서울대교	마포구와 영등포구와의 경계	마포구 영등포구	마포구	"
5	영동교	성동구와 강남구와의 경계	성동구 강남구	성동구	"
6	잠실대교	"	성동구 강남구	성동구	"
7	광진교	"	성동구 강남구	강남구 (천호출장소)	"
8	천호대교	"	성동구 강남구	강남구 (천호출장소)	"
9	중암대교	정릉천	동대문구 성북구	동대문구	"
10	안암교	성북천	동대문구 성북구	성북구	"

7. 하 천					
순위	명 칭	위 치	해 당 청	관 할 청	한 계
1	한 강	성동구와 강남구와의 경계	성 동 구 강 남 구	성 동 구 강 남 구	구제까지 행정구역 관할구에서 관리
2	"	용산구와 강남구와의 경계	용 산 구 강 남 구	용 산 구 강 남 구	"
3	"	용산구와 관악구와의 경계	용 산 구 관 악 구	용 산 구 관 악 구	"
4	"	마포구와 영등포구와의 경계	마 포 구 영 등 포 구	마 포 구 영 등 포 구	"
5	중 랑 천	면목동구경계 - 군자교	동대문구 성 동 구	동대문구	성동구계방부지까지
6	성 내 천	강남구이동 439 - 이동 408	강 남 구 천호출장소	천호출장소	한강합류점 상류측 전부
7	탄 천	강남구대치동 3의 2 - 세곡동시계	강 남 구 천호출장소	강 남 구 천호출장소	능천좌안, 능천우안
8	목 동 천	목동교상류	동대문구 도 봉 구	도 봉 구	중랑천 합류지점 상류측 전부
9	불 광 천	중산교 - 와산교	서대문구 은명출장소	서대문구	중산교상류측 전부
10	정 능 천	중암대교 상류	동대문구 성 북 구	성 북 구	중암대교 상류측 전부

8. 녹 지 대					
순위	명 칭	위 치	해 당청	관 할청	한 계
1	의주로분리대	의주로파출소앞 - 서대 분경철서알	중 구 서대분구	서대분구	녹지대의전부
2	독립분녹지대	독 립 분	종 로 구 서대분구	"	"
3	동교동녹지대	동교동로타리	서대분구 마 포 구	"	"
4	신촌로타리 녹지대	신촌로타리	서대분구 마 포 구	마 포 구	"

고 시

1976. 3. 11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고시제 46 호

도시계획사업 ( 도로 )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23 호 ( 75.8.14 ) 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 도로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제 26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 ( 73.4.4 )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 사업시행의 위치 : 방산동 64-5 ~ 주교동 30~10
2. 사업의 종류및명칭 : 방산 종합시장내 우회도로 신설공사
3. 사업규모 : B = 10 m , B = 230 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착수 및 준공예정일 : 76.1.10 ~ 77.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 별첨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 별첨토지조서

토 지 조 서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 유 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1	중방산동				64-5	대	10.1	광희동 1가 8-3	조 창 수
2	"				8-2	"	8.2	율지로 3가 225	양 두 성
3	"				96-3	"	5.5		국
4	"				1-7	"	0.2	신당동 251-109	김 수 욱
5	"				93-5	"	13.2	도봉구창동 204-32	박 인 석
6	"				93-6	"	1.5	용산구한남동 743-26	이 봉 일
7	"				93-7	"	0.2	"	"
8	"				92-9	"	0.1		국
9	"				97-3	"	2.2	청진동 23	정 분 회
10	"				97-4	"	7.5	"	"
11	"				96-1	"	14.0	방산동 94	이 금 배
12	"				94-1	"	4.1	도봉구창동 204-32	박 인 석
13	"				94-2	"	6.8	방산동 94	이 금 배
14	"				64-4	"	4.5	도봉구창동 204-32	박 인 석
15	"				1-3	"	2.0	방산동 93	교 립 청
16	주교동				19-16	"	0.7	주교동 310	이 연 원
17	"				309-4	"	0.1	" 10-1	"
18	"				310-3	"	15.5	" 310	"
19	"				19-17	"	4.5	"	"
20	"				311-4	"	0.7	" 311-3	이 윤 순
21	"				19-18	"	0.9		서 울 시
22	"				19-19	"	0.4		"
23	"				298-6	"	3	주교동 298-3	황 윤 근
24	"				298-7	"	2.7	" 298-4	박 우 업
25	"				298-8	"	1.8		대 총 히 아
26	"				299-2	"	1.2	수석동 31	장 인 환

순 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장)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27	주교동				298-2	대	21.7	서대문구 중림동 156-18	송순형
28	"				10-10	"	2.8		서울특별시
29	"				35-4	"	22.5		"
30	"				36-2	"	18.3		"
31	"				32-2	"	1		국
32	"				3	"	1.5		서울특별시
33	"				36-2	"	18.3		"
34	"				30-10	"	9		국
35	"				43-35	"	1.1	주교동 43-10	조내식
36	"				43-34	"	3.3	주교동 43-7	오귀복
37	"				43-33	"	0.6	주교동 43-6	김창호
38	"				38-2	"	10	성북구 성북동 1가 35	홍영재
39	"				39-3	"	14.7	예관동 53-5	전수손
40	"				30-9	"	4.3		국
41	"				39-4	"	3.6		서울특별시
42	"				39-3	"	2.6	주교동 297-7	김두빈
43	"				30-13	"	0.9	"	"
44	"				19-20	"	3.6		서울특별시
45	"				34-2	"	0.6		"

◎ 서울특별시고시제 47 호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 및 지적 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 제 13 조와 대통령령 제 7753 호 ( 75. 8. 22 ) 의 규정에 의하거

이들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3. 11

서울특별시장

시 설 조 서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 (동송단지)	종로구 동송동 1-13	69,925 (21,152평)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 (용두단지)	동대문구 용두동 138-8 외 6 필지	66,743 (20,189평)	
<p>※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 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관할 구청에 보관함.</p>			
<p>◎ 서울특별시고시제48호</p> <p>도시계획 특정가구 정비지구 변경(해제)지적승인</p> <p>1. 건설부고시제 222 호 ( 75.12.31 ) 로 변경 결정된 특정가구 정비지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적승인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 호 ( 73.4.4 ) 의 규정</p>		<p>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p> <p>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6. 3. 11</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도시계획 특정가구 정비지구 변경(해제)지적승인조서			
지 구 명	위 치	면 적 ( 해 제 )	
청량리 지구	청량리동 235 번지의외	92,000	
연건 지구	연건동 126 #	41,000	
동송 지구	동송동 31 #	69,278	
용두제 1, 2, 3 지구	용두동 189 #	111,057	
이화 지구	이화동 119 #	78,759	
<p>※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함.</p>			



<p>◎ 서울특별시고시제 50호</p> <p>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결정 및 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동법 제 13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호(73.4.4)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로서</p>		<p>하여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양서출장소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1976. 3. 15.</p> <p>서울특별시장</p>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공용의 청사 (공항경찰서)	영등포구 화곡동 1-1	9,918㎡ (3,000평)	
<p>*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은 서울특별시정과 양서출장소에 보관</p>			
<p>◎ 서울특별시고시제 51호</p> <p>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p> <p>1. 건설부 고시 제 2493호(66.6.21)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 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조와 동법 제 26조 및</p>		<p>건설부고시 제 123호(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p> <p>1976. 2. .</p> <p>서울특별시장</p>	

<p>1. 사업시행의 위치 : 연희동~홍남교간 도로 개설공사</p> <p>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연희동~남가좌동</p> <p>3. 사업규모 : B = 20 m, L = 400m</p> <p>4. 사업시행자 : 서대문구청장</p> <p>5. 착수 및 준공예정일 : 1976.1.5 ~ 1976.12.31</p> <p>6.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 별첨</p> <p>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가. 노 선 조 서</p>	<p>◎ 서울특별시고시제52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일부변경및지적승인</p> <p>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및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제13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123호(73.4.4)의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시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6. 3. 16 서울특별시장</p>
---	--

구분	등급	류별	번호	목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변경	소로	3		6	142	신당동 386-129	신당동 375-24	위치 일부 변경
기정 변경	"	"		"	150	신당동 377-11	신당동 381-5	위치 일부 변경
기정 변경	"	"		"	20 30	우이동 180-2	우이동 180-2	위치 일부 변경
기정 변경	"	"		"	60	봉천동 673-16	봉천동 673-27	위치 일부 변경
기정 변경	"	"		"	30 30	장위동 15-5 앞	장위동 14-18 앞	위치 일부 변경

※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53 호

서울시도시계획(공원)결정및일부변경

1. 건설부고시 제 465 호(71.8.6), 제 313 호(72.8.4) 및 제 146 호(75.9.3)로 신설 및 일부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공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0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73.4.4)의 위임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제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6. 3. 16

서울특별시장

가. 공원 일부 신설 및 변경 내역

공 원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월계공원	도봉구 월계동, 창동 일원			442,000	신설
화곡공원	영등포 등촌동, 화곡동 일원	511,675	(증) 220,625	732,300	
관악산 공 원	관악구 신림동, 봉천동, 영등포구 시흥동, 독산동 일대	15,692,070	(증) 499,650	16,191,720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p>◎ 서울 특별시 고시 제 54 호</p> <p>서울특별시광고물게시시설금지지역고시</p> <p>1. 광고물 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 2 조에 의거 광고물 등 표시, 기</p>		<p>시. 시설 금지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한다.</p> <p>1976. 3. .</p> <p>서울 특별시 장</p>		
근거	지역구분	지정 금지 지역	금지광고	비고
<p>광고물 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 2 조 1 호</p>	주거지역	사직터널 동쪽입구 - 종합청사 - 동십자 - 삼청공원 동단내 북쪽 4 킬로미터 지역이내	중, 횡, 돌출 광고물 이외의 일체의 광고물류	설치차 (규칙제 4 조) 는 허가 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상업지역	중앙청에서 시청간도로 양단 으로부터 50 미터 지역내	"	"
	녹지지역	도시 계획법에 의거 녹지지역 으로서 이미 고시된 전 지역내	일체의 광고물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 관청의 사전협의 를 받아 설치한다
	특정거리	1. 시청 - 남대문 - 제 1 한강교 2. 시청 - 중앙일보사 - 아현교 가도로 진입로 서단 50m 이내 3. 남대문 - 미도파 - 을지로 입구 - 안국동 로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간판</li> <li>○ 벽보류</li> <li>○ 에드바문</li> <li>○ 현수막</li> <li>○ 프랑카드</li> </ul>	설치자 (규칙제 4 조) 는 허가 관청의 사전 승인 협의를 받아 설치한다.

근 거	지역구분	지 정 금 지 지 역	금지 광고	비 고
		4. 시청 - 소공로 - 빅토리아호텔 5. 동아일보사 - 파교다공원 - 동대문 6. 시청 - 을지로 1가 - 을지로 6가 (을지로 6가 11) 7. 동아일보사 - 관교 - 청계천 6가 (종로 6가 289) 8. 서울역 - 세종호텔 - 퇴계로 6가 (광희동 203) 이상 8 개 간선도로 양단으로 부터 50 미터 이내 지역		
동규칙제 2 조 2 호	문화재 및 보호지역	1. 국 보 가. 서울 남대문 2. 보 물 (보관처포함) 가. 서울 동대문 나. 서울 보신각종 다. 서울 동묘 라. 서울 사직단 정문 3. 사 적 가. 서울성곽 (종로누상동) 나. 독립문 (서대문교북동) 다. 경 복 궁 라. 서울 사직단 마. 창덕궁 (비원포함) 바. 덕 수 궁 사. 종 료	중, 횡, 늘 출이외의 일체광고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경우에는 허가신청의 사전협의를 받아 설치한다.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연장(M)	기점	종점
신설	소로	2	8	240	와룡동 1-205	와룡동 1-169
신설	"	1	10	150	장위동 74-55	장위동 74-126
신설	"	3	6	30	중곡동 503-22	중곡동 503-86
신설	"	2	8	10	중곡동 503-84	중곡동 503-84
신설	"	3	6	286	하월곡동 88-16	하월곡동 88-4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끝.

근거	지역구분	지정금지지역	금지광고	비고
		아. 서울 문묘 자. 루상궁 차. 정릉 카. 파고다공원 이상 16개소 경계지점에서 100미터 이내 지역		

2. 부칙  
 가. (시행일)이 고시는 1976.4.1 부터 시행한다.  
 나. (경과조치)이 고시 이전에 기 허락설치된 광고게시 시설물은 고시후 6개월 이내에 철거 또는 이전하여야 한다.  
 단, 옥상 광고물(빌보드, 배운싸인)은 3년 이내에 이전 또는 철거 조치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고시 제 57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  
 1. 당시 관내 도시계획 시설(도로)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123 호 (73.4.4)의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 도면은 서울시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3. 17.  
 서울특별시 장  
 가. 노선 조서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 제 55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  
계획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58 호 (75. 10.7) 로 고시된 한남동 유수지 정지공사 구간내의 저촉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용산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3. 10.

서울특별시

<공람 개요>

1. 사업장위치 : 용산구 한남동 528-3지내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한남동 유수지 정비공사
3. 사업의 규모 : 유수지확장 A = 449.2명
4.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 76.4.1 - 77.12.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토지조서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

주소성명 :

토 지 조 서

순위	소재지	분할건표시			분할표시 (수용대상)			소유자 주소	관계인 성명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1	한남동	527-1	전	32	527-1	전	32	시유지	
2	"	528-1	"	60	528-1	"	60	"	
3	"	531-1	대	25	531-1	대	25	"	
4	"	527-3	전	30	527-3	전	30	한남동 57-26	이계용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장)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5	한남동	528-3	전	48	528-3	전	48	한남동 577-26	이세용	
6	"	531-2	"	25	531-2	"	25	"	"	
7	"	530-1	대	48	530-1	대	48	한남동 530-1	이원득	
8	"	533-1	"	32	533-1	"	32	제기동 218	한기홍	
9	"	532-1	"	76	532-1	"	76	녹번동 53-20-	김채도	
10	"	536-1	"	10	536-1	"	10	한남동 536-1	손창문	
11	"	536-2	"	5.2	536-2	"	5.2	광희동 2가 303-17	빅영국	
12	"	532-2	도	18	532-2	도	18	녹번동 53-20	김채도	
13	"	536-4	"	40	536-4	"	40	한남동 536-1	손창문	

㉠ 서울특별시 공고 제 57 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  
 계획 일부 변경공람  
 1. 서울특별시 창동 토지구획정리 지구내 일부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47 조 및 동법 제 55 조와 동법 제 33 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공람에 공합니다.  
 2. 환지계획변경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3. 서류 송달은 토지소유자에게 별도 송달 할것이나 미 수령되는 토지소

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름한다.  
 76. 3. .  
 서울특별시 장

㉡ 서울특별시 공고 제 58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공람 공고  
 1. 건설부 고시 제-198 호(71.4.7) 로 고시된 천호대교 가설(접속부분) 공사구간내외 저축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건설국 도시시설법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3.

서울특별시

공 랑 계 요

1. 사업장 위치 : 강남구 광장동-  
    풍납동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천호대교  
    가설공사 (접속부분)
3. 사업의 규모 : 가. 교량

B = 25.6m L = 1.150m

나. 접속용벽 B = 25.6-50m  
L = 178m

4. 사업의 시정자 : 서울특별시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 74.

8.17-77.6.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토지조서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토 지 조 서

순위	소재지	분 발 전 표 시			분 용 후 표 시 (수 용 대 장)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	지 번	지 목	지 적	주 소	성 명
1	풍 납	44-1	대	1,060	44-165	대	401	인천시동구반석동38	대성목재 공업 Co
2	"	44-89	"	288	44-89	"	37	풍납동 44	이 구 용
3	"	44-88	"	57	44-88	"	33	김천시성내동 60-1	김천잠사 공업 Co
4	"	43-10	전	209	43-30	전	59	구의동 374	이 형 우
5	"	43-16	대	16	43-31	대	12.1	풍납동 43	강 대 봉
6	"	43-15	"	30	43-32	"	2	"	최 희 연

순위	소재지	분할 전 표시			분할 후 표시 (수용대관)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7	풍납	43-2	대	82	43-33	대	10	풍납동 43	김상목
8	"	43-12	"	73	43-34	"	32	휘경동 161	박기연
9	"	43-9	건	2,507	43-35	건	1,278	"	"
10	"	43-6	"	466	43-37	"	259	"	"
11	"	43-1	"	4,534	43-39	"	744	"	"
12	"	43-23	"	115	43-23	"	49	풍납동 44	이구용
13	"	43-25	대	35	43-25	대	27	"	"
14	"	48-1	임야	1,889	48-4	임야	424	풍납동 43	김상목
15	"	47-32	대	196	47-32	대	106	홍익동 208	정균희
16	"	43-22	"	27	47-22	"	12	풍납동 47-22	김창남
17	"	47-13	"	132	47-56	"	56	충무로 5가 8-8	김정찬
18	"	47-41	"	37	47-57	"	36	풍납동 47-47	이용식
19	"	47-42	"	30	47-58	"	8	풍납동 47-4	이범희
20	"	47-15	"	25	47-59	"	17	풍납동 47	조인증
21	"	110-1	임야	964	110-2	임야	122	풍납동 92	김옥분
22	"	47-28	건	200	47-28	건	84	권농동 325-28	김세창
23	"	66-2	대	68	66-2	대	58	풍납동 123	채중식
24	"	66-7	"	49	66-30	"	3	풍납동 66-7	이화용
25	"				44-39	"	50	천호동 479-17	홍춘화
26	"				44-87	"	23	"	신우삼
27	"				43-3	"	80	풍납동 44	윤익영
28	"				43-24	"	27	풍납동 43	이춘광
29	"				43-18	"	33	풍납동 44	윤익영
30	"				43-22	"	29	"	심찬구
31	"				43-21	"	65	풍납동 43	심판식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장)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32	풍남				43-17	전	24	풍남동 43	홍아왕
33	"				43-19	대	56	풍남동 44	윤병건
34	"				43-20	전	42	"	"
35	"				43-28	"	19	풍남동 43	김상묵
36	"				43-27	대	19	풍남동 44	윤병건
37	"				43-29	"	7	"	"
38	"				43-11	전	88	필동 3 가 38-2	근광호
39	"				48-3	입야	40	휘경동 29-35	성광길
40	"				47-18	대	57	신림동 19-163	김동석
41	"				47-19	"	45	풍남동 47-19	김범수
42	"				47-31	"	63	풍남동 47	염정산
43	"				47-40	"	38	풍남동 47-40	최인수
44	"				47-20	"	65	풍남동 47-20	김길용
45	"				47-21	"	31	미아동 410-12	김은순
46	"				47-34	"	44	풍남동 47-34	김영재
47	"				47-43	전	40	전농동 325-28	김새창
48	"				47-16	"	17	풍남동 47-16	김용식
49	"				47-17	대	19	풍남동 47-17	이상천
50	"				47-28	전	200	성내동 21	원은용
51	"				47-37	대	8	풍남동 47-37	정창수
52	"				47-35	"	18	천안시대동 235	지우순
53	"				47-36	"	25	풍남동 47-36	김일년
54	"	66-8	대	47	66-31	"	11	보문동 2 가 215	이희춘
55	"	66-5	"	55	66-32	"	2	풍남동 66-5	김덕호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장)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56	풍남	66-6	대	47	66-33	대	3	친호동 362-10	이사성
57	"	5-9	"	39	66-34	"	19	풍남동 66-9	장세원
58	"	67-10	"	25	67-15	"	16	풍남동 67-10	조원풍
59	"	69-12	"	30	69-12	"	29	풍남동 69-12	노주용
60	"	69-11	"	30	69-27	"	6	풍남동 69-11	장광호
61	"	69-7	"	30	69-28	"	13	풍남동 69-7	문경린
62	"	69-19	"	28	69-19	"	18	풍남동 69-19	신중식
63	"	69-6	"	27	69-6	"	22	풍남동 69-6	김영조
64	"	72-2	"	30	72-2	"	22	풍남동 72-2	김복연
65	"	72-3	"	30	72-3	"	19	풍남동 97	윤창길
66	"	72-4	"	30	72-4	"	15	풍남동 72-4	윤중규
67	"	98-1	건	1,000	98-1	건	329	풍남동 129	이영순
68	"	98-4	"	386	98-6	"	48	풍남동 129	"
69	"	98-3	"	216	98-7	"	11	관훈동 184	이종관
70	"	99-11	대	15	99-45	대	1	친호동 444-21	김학전
71	"	99-17	"	6	99-46	"	2	"	"
72	"	99-22	도로	135	99-47	도로	116	성내동 161-252	송보경
73	"	99-22	"	135	99-49	"	5	"	"
74	"	99-36	대	71	99-50	대	31	풍남동 102	박규용
75	"	99-40	"	32	99-51	"	3	풍남동 99-40	우성희
76	"	99-24	"	80	99-52	"	43	성내동 161-160	이영조
77	"	99-35	"	70	99-53	"	42	풍남동 99-35	이종태
78	"	99-25	"	57	99-54	"	38	풍남동 99-25	최희순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장)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79	풍납	99-42	대	43	99-55	대	34	풍납동 99-24	송계원
80	"	101-68	"	37	104-94	"	2	풍납동 101-68	김철성
81	"	101-69	도로	121	101-95	도로	5	서린동 149	구금이
82	"	102-10	대	3	102-16	대	2	풍납동 99-40	우성희
83	"	103-6	"	30	103-25	"	5	풍납동 103-6	박순남
84	"	103-9	"	44	103-26	"	17	풍납동 103-9	최규성
85	"	103-19	"	6	103-27	"	4	풍납동 103-9	"
86	"	103-4	"	202	103-28	"	10	하월동 33-345	김수현
87	"	103-8	"	68	103-29	"	31	"	김희인
88	"	103-21	"	34	103-21	"	31	풍납동 103-21	김승백
89	"	103-7	"	50	103-31	"	5	풍납동 103-7	최덕준
90	"	103-2	"	39	103-32	"	16	천호동 454-34	황인남
91	"	103-17	"	30	103-17	"	29	천호동 425	손복희
92	"	104-1	전	1,426	104-2	전	547	한남동 11-336	단종호
93	"	105-1	"	277	105-1	"	8	"	김춘범
94	"	109-1	"	1,135	109-3	"	335	입정동 260	박희원
95	"	109-2	"	133	109-5	"	39	"	"
96	"	72-1	대	1,065	72-9	대	24	풍납동 97	윤창길
97	"	72-1	"	1,065	72-8	"	13	풍납동 97	"
98	"	69-9	"	390	69-25	"	45	풍납동 129	박홍호
99	"	70-17	전	37	70-29	전	15	신길동 120	박의찬
100	"	70-20	"	65	70-20	"	59	계동 140-44	김덕영
101	"	70-12	"	125	70-31	"	59	신당동 52-95	심익덕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장)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02	동남	70-23	전	41	70-23	전	14	금호동 3가 613	이석월
103	"	70-24	"	56	70-33	"	2	미아동 206	설성환
104	"	70-25	"	100	70-34	"	99	천호동 346-3	차두운
105	"	70-27	"	113	70-27	"	63	명륜동 4가 166	조덕성
106	"	71-1	"	1,294	71-2	"	513	성내동 63	김완수
107	"				99-12	대	20	풍납동 99	김정환
108	"				99-18	"	8	"	"
109	"				99-1	"	162	서교동 295-5	현향순
110	"				99-44	"	38	풍납동 99-44	홍일용
111	"				99-26	"	49	풍납동 99-26	박인혁
112	"				99-37	"	53	필동 1가 3-7	문봉록
113	"				99-21	"	40	신당동 351-43	이웅선
114	"				99-27	"	50	화곡동 346-53	박종문
115	"				99-28	"	50	풍납동 99-28	오영주
116	"				99-29	"	50	평동 28-1	신성무역사 추식회사
117	"				99-30	"	50	풍납동 99-30	김태기
118	"				99-31	"	26	풍납동 99-31	황욱기
119	"				99-43	"	25	풍납동 99-43	임영창
120	"				99-32	"	50	풍납동 99-32	이병욱
121	"				99-33	"	50	풍납동 99-33	송오성
122	"				99-20	"	17	풍납동 100	남기철인 외 3인
123	"				99-8	"	12	풍납동 100-3	최배순
124	"				99-4	"	44	풍납동 99-4	심문섭
125	"				99-5	"	37	"	성순화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항대장)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번호
126	풍남				99-7	대	50	풍남동 99-4	심문섭
127	"				100-3	"	26	풍남동 100-3	최백순
128	"				99-14	"	4	중남동 99	김정관
129	"				66-10	"	44	풍남동 66-10	최성주
130	"				66-11	"	23	풍남동 66-11	최근호
131	"				66-13	"	48	충신동 107-26	김성수
132	"				66-14	"	47	풍남동 66-14	김외인
133	"				66-15	"	37	동두천읍동두천리 530	박귀현
134	"				66-19	"	19	풍남동 66-19	김영권
135	"				66-12	"	38	풍남동 66-12	김계숙
136	"				67-7	"	27	풍남동 67-7	소해봉
137	"				67-8	"	12	풍남동 69-13	김종화
138	"				67-9	전	10	풍남동 67	이태우
139	"				69-13	대	30	풍남동 69-13	백혜식
140	"				69-23	"	28	천호동 42-1	이태우
141	"				69-9	"	345	풍남동 129	김성녀
142	"				70-16	전	50	시흥군소대면포리사 1	박종호
143	"				70-15	"	25	송정동 73-5	유인옥
144	"				70-14	"	15	연진동 190-22	박이백
145	"				70-18	"	76	화곡동 355-29	장병국
146	"				70-19	"	25	장충동 2가 191-45	홍수봉
147	"				70-26	"	30	신당동 67-20	김숙진
148	"	47-30	잡	515	47-47	잡중	450	신당동 566	윤지호
149	성내	71-1	대	1,005	71-2	대	340	계기동 122-234	김영석
150	"	72	"	1,278	72-1	"	249	관철동 11-11	서연인
									조인하

◎ 서울특별시 공고 제 59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공 략 공 고

1. 건설부고시 제 124 호 (70.2.7)로 고시된 공사구간내의 저촉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트북다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2. .

서울특별시장

공 략 개 요

1. 사업장 위치 : 관악구 봉천동 244-253 관악구 봉천동 산 8-2 — 산 8-1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낙성대 - 서울대학교 후문간 도로공사
3. 사업의 규모 : 가. B = 30(15) m 나. L = 730 m
4.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 1976. 2. — 1977. 4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토지조서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토 지 조 서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상)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봉천	244	내	448	244-4	대	193	신태동 401	윤병조
	"	244-1	전	200	244-1	전	15	봉천동 215	이종철
	"	244-2	전	756	244-6	전	19	"	"



순 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부용대장시)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봉천	247	건	171	247	건	103	봉천동 63-74	정범동
	"	247-1	건	398	247-1	건	54	"	"
	"	248	대	474	248-1	대	159	서교동 395-4	염동호
	"	249-1	대	67	249-6	대	4	용두동 236-50	김용준
	"	249-4	대	344	249-7	대	25	"	"
	"	253-4	건	344	253-7	건	163	봉천동 218	최광문
	"	253-3	건	378	253-3	건	8	"	최태호
	계			3,717			743		
	봉천	산8-2	임야	3무10보	산8-9	임야	21명	원효로 2가1-13	민외홍
	"	산8-4	"	"	산8-11	"	34	삼청동 97	이은숙
	"	산8-5	"	1반9무24보	산8-11	"	156	신당동 27-21	변확연
	"	산8-7	"	5무보	산8-12	"	32	수유동 49-3	이인영
	"	산32	"	5반2무보	산7-3	"	99	산림청	
	"	산38	"	1정	산38-2	"	10	봉천동 215	디종철
	"	산4-2	"	43정3반3무 10보	산4-3	"	16	문교부	
	"	산7-1	"	6반보	산7-3	"	25	산림청	
	"	산8	"	8정5반7무 보	산8-15	"	1,950	계기농 153	김병호
	계			163,014명			2,343명		

◎서울특별시공고제 60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  
생산지정업체대체지정공고

당시에서 지정한 수출품생산지정  
업체중 소재지변경이 있는 다음

업체를 중소기업수출품 생산지정업체  
지정 및 자금지원요령 제 7 조의 규  
정에 의하여 대체지정공고한다.

1976. 3. .  
서울특별시장

현 지 정					대 체 지 정				
지정 번호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	지정 번호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
476	동아 피아노 제작소	이병근	성동구 농동 451-26	피아노	301	동아 피아노 제작소	이병근	동대문 장안동 43-12	피아노

◎서울특별시공고제 62 호

영동제 2 지구 (추가)  
환지계획공람공고

1. 당시가 시행하고 있는 영동

제 2 지구 (추가) 토지구획정리 사  
업지구내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 46 조의 규정에

외한 관지계획을 수립하였기 동법 제 47조 및 제 3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관계서류를 공람에 공하고 있다.

2. 관계조서는 당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 공고에 대한 통보문은 별도로 토지소유자에게 발송될 것이나 미수 영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6.3.19

서울특별시장

영등포구공고제 95 호

공인신조공고









영등포구 시동제 1동장, 영등포제 2동장, 당산제 1동장, 개봉동장, 고척동장, 영등포제 3동장, 신길제 4동장, 구로제 3동장의 직인 등 6인 을 서울특별시공인조례제 9조의 정에 의거 공고함.









신조공고사용일: 76.3.16

1976.3.12

영등포구청장 김익수

개 각 공 고 인 형

	직 인	직 인		직 인	직 인
영등포제 3동장			구로제 3동장		
신길제 4동장			영등포제 2동장		

	직 인	계 인
시 흥 계 1 동 장		
담 산 계 1 동 장		
고 척 동 장		
개 봉 동 장		

예 규

서울특별시 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사무처리요령중 개정요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6년 3월 일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서울특별시에규제 321 호

서울특별시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사무처리요령중개정요령

서울특별시 소규모양곡가공업 허가사무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제 3 조 제 2 항 중 제 1 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전물 : 9.9평이상 (30㎡)

부 칙

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직업안정업무처리요령중

개정요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6년 3월 일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서울특별시에규제 322 호

서울특별시직업안정업무처리요강중개정요강

서울특별시 직업안정업무처리요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 조 제 3 항 중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 4 호 다음에 제 5 호 및 제 6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신원보증서 (신원보증인의 인감 증명 또는 주민등록 등, 초본첨부)
- 5.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6. 호적등본 또는 초본

부 칙

(시령일) 이 요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긴급자동차 사무취급요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6년 3월 일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서울특별시예규제 323 호

긴급자동차사무취급요강중개정규정

긴급자동차사무취급요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 조중 "3월"을 "1년"으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사 령

◎1976.3.6

부녀과 서기관 권남형

국가공무원법 제 74 조제 1 항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76.3.6자 정년퇴직을 명함.

◎1976.3.12

청소 1 과 지방행정사무관 정현국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

에 처함.

외 약 과 지방행정 이 기 환  
부직을 명함.

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6 월에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오 세 결  
서 기 보

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3 월에 처함.

종로구 지방행정 신 상 균  
서 기

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

도봉구 지방행정 승 진 명

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3 월에 처함.

강남구 지방행정 심 재 천  
주 사 보

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3 월에 처함.

강남구 지방행정 여 병 옥  
주 사 보

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 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

<p>마 포 구 지방행정 이태중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2 호의 규정에 외거 감봉 1 월 에 처함.</p>	<p>성 동 구 지방행정 박경만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2 호의 규정에 외거 견책에 처함.</p>
<p>용 산 구 지방행정 박용부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2 호의 규정에 외거 견책에 처함.</p>	<p>자 동 차 정 비 지방행정 박종래 사 업 소 시 기 보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2 호의 규정에 외거 감봉 1 월 에 처함.</p>
<p>동 대 문 구 지방행정 이경훈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2 호의 규정에 외거 견책에 처함.</p>	<p>예 산 담 당 관 지방행정 이보규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2 호의 규정에 외거 견책에 처함.</p>
<p>강 남 구 보 건 소 지방행정 임완규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2 호의 규정에 외거 견책에 처함.</p>	<p>◎ 1976.3.13 도 봉 구 보 건 소 지방행정 김세환 (민원봉사실장) 사 무 관 장제장 장장에 포함.</p>
<p>성 동 구 보 건 소 지방행정 장유진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2 호의 규정에 외거 견책에 처함.</p>	<p>서 울 특 별 시 부이사관 장성준 감 사 관 서 울 특 별 시 증구청장에 포함.</p>
<p>자 동 차 정 비 지방행정 김형훈 사 업 소 주 사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2 호의 규정에 외거 견책에 처함.</p>	<p>서 울 특 별 시 부이사관 양재범 증 구 청 장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1976년 3월 13일 대 통 령</p>

◎ 1976.3.15

강남구청장 부이사관 국용호  
서울특별시 감사관에 보함.

관악구청장 부이사관 안창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 보함.

종로구시민생활국장 서기관 서상빈  
소방본부장 직무대리를 명함.

수도행정담당관 직무대리 지방서기관 손발수  
서기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직무대리를  
명함.

행정과장 서기관 윤백영  
마포구청장 직무대리를 명함.

건설행정담당관 직무대리 서기관 강정희  
관악구청장 직무대리를 명함.

지하철본부 지방서기관 이영식  
서기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직무대리를  
명함.

보건행정과장 서기관 최상근  
지방서기관에 임함.

지하철본부 운영담당관 직무대리를  
명함.

중구시민생활국장 서기관 이순용  
지방서기관에 임함.

천호출장소장에 보함.

서울특별시 소방본부장 부이사관 한갑석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부이사관 김동현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부이사관 이상목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부이사관 손영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생활국장 서기관 박연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생활국장 서기관 김봉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민생활국장 서기관 이희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민생활국장 서기관 권효안

서울특별시 천호출장소장 지방서기관 조동하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1976.3.15.

대령명

마포구 서기관 안중운  
국가공무원법 제 73조의 2 제 1항  
제 5호의 규정에 의거 그직위를  
해제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주사무사 김재철  
대통령비서실 파견 근무를 해제함.  
문교부청소년지도자연수원 파견  
근무를 명함.

◎ 1976.3.16

도시정비과 토목기점 유봉환  
구회정리과장에 보함.



<p>구회정리과 토목기정 김교한 토목시험소장 직무대리를 명함.</p>	<p>환경국 청소1과장에 포함.</p>
<p>지하철본부 토목기정 안상영 공무과 도시정비과장 직무대리를 명함.</p>	<p>산업국 서기관 문무봉 농축과장 도시정비국 도시행정과장에 포함.</p>
<p>하수과 토목기정 나정환 지하철본부 공무과장 직무대리를 명함.</p>	<p>산업국농축과 지방축산기과 황인욱 산업국 농축과장 직무대리를 명함.</p>
<p>주택개량과 토목기정 이 후천 하수과장에 포함.</p>	<p>내무국인사과 지방행정사무관 권명호</p>
<p>주택개량과 토목기정 최중환 주택개량과장 직무대리를 명함.</p>	<p>감사관 순찰담당관 직무대리를 명함.</p>
<p>관광운수국 운수3과장 서기관 김계령 내무국 행정과장에 포함.</p>	<p>환경국 청소1과장 서기관 김용호</p>
<p>내무국시민과장 서기관 박형원 보건사회국 보건행정과장에 포함.</p>	<p>종로구 시민생활국장에 포함.</p>
<p>용산구 민방위국장 서기관 김두기 민방위국 민방위과장에 포함.</p>	<p>건설국 시설관리과장 서기관 김영근</p>
<p>감사관 순찰담당관 서기관 남상수 건설국 시설관리과장에 포함.</p>	<p>중구 시민생활국장에 포함.</p>
<p>성동구 건설관리국장 서기관 백남인</p>	<p>성동구 시민생활국장 서기관 김진욱</p>
	<p>동대문 시민생활국장에 포함.</p>
	<p>종로구 건설관리국장 지방서기관 한상건</p>
	<p>서대문구 시민생활국장 직무대리를 명함.</p>

<p>마포구 건설관리국장 지방서기관 백상승 마포구 시민생활국장 직무대리를 명함.</p>	<p>성동구 민방위국장 서기관 엄주창 성동구 건설관리국장 직무대리를 명함.</p>
<p>도시정비국 도시행정과장 서기관 이종민 용산구 시민생활국장에 포함.</p>	<p>도봉구 건설관리국장 김영수 성북구 건설관리국장에 포함.</p>
<p>영등포구 시민생활국장 서기관 유근용 성동구 시민생활국장에 포함.</p>	<p>서대문구 건설관리국장 지방서기관 이창송 도봉구 건설관리국장에 포함.</p>
<p>내무국행정과 지방행정 사무관 서정희 도봉구 시민생활국장 직무대리를 명함.</p>	<p>성북구 민방위국장 서기관 이경만 마포구 건설관리국장 직무대리를 명함.</p>
<p>성북구 건설관리국장 지방서기관 이종권 영등포구 시민생활국장 직무대리를 명함.</p>	<p>도봉구 민방위국장 서기관 김용주 용산구 건설관리국장 직무대리를 명함.</p>
<p>영등포구 건설관리국장 지방서기관 장약관 관악구 시민생활국장 직무대리를 명함.</p>	<p>영등포구 민방위국장 서기관 오기철 영등포구 건설관리국장 직무대리를 명함.</p>
<p>교육원교수부 지방서기관 박한경 종로구 건설관리국장에 포함.</p>	<p>도봉구 시민생활국장 서기관 이문제 관악구 건설관리국장 직무대리를 명함.</p>
	<p>용산구 건설관리국장 지방서기관 원효상 서대문구 건설관리국장에 포함. 내무국총무과 지방행정 사무관 김승경 성동구 민방위국장 직무대리를 명함. 관악구 건설관리국장 지방행정 사무관 안병태 용산구 민방위국장 직무대리를 명함.</p>

<p>주 택 행정과 지방행정 사무관 최제구</p> <p>성북구 민방위국장 직무대리 를 명함.</p>	<p>성 동 구 지방토목 기사보 김영오</p> <p>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1,2호의 규정에 의거 전책 에 처함.</p>
<p>공 보 실 지방행정 사무관 김치운</p> <p>도봉구 민방위국장 직무대리 를 명함.</p>	<p>도 봉 구 지방토목 기사 양원석</p> <p>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1,2호의 규정에 의거 전책 에 처함.</p>
<p>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 교수부 사무관 이상정</p> <p>영등포구 민방위국장 직무 대리물 명함.</p>	<p>중 구 지방토목 기사보 김형진</p> <p>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1,2호의 규정에 의거 전책 에 처함.</p>
<p>기획관리관 지방행정 예산담당관 사무관 안식환</p> <p>공무원교육원교수부 근무를 명함.</p>	<p>마 포 구 지방토목 기사보 이규권</p> <p>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1,2호의 규정에 의거 전책 에 처함.</p>
<p>내 무 국 지방행정 새마을지도과 사무관 이경배</p> <p>공무원교육원교수부 근무를 명함. (새마을 노임사업 추진 본부 파견근무를 병함)</p>	<p>○ 1976.3.18</p> <p>노량진수원지 지방토목 기사보 강영철</p> <p>수도국 수원과장 직무대리 를 명함.</p>
<p>○ 1976.3.17</p> <p>도시행정과 지방토목 기사보 최홍순</p> <p>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1,2 호의 규정에 의거 전책에 처함.</p>	<p>수 원 과 토목기정 박원선</p> <p>노량진수원지사사무소장 직무 대리물 명함.</p>
<p>유령출장소 지방토목 기사보 박수돈</p> <p>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1,2호의 규정에 의거 전책 에 처함.</p>	<p>노량진수원지사사무소장 직무 대리물 명함.</p>

문화공보실 지방행정 사무관 최용운	주택행정과 지방행정 사무관 김진수
문화공보실 공보계장에 포함.	주택행정과 주택행정계장에 포함.
지하철본부 지방행정 사무관 임경선	주택관리과 지방행정 주 이민주
예산담당관 예산 1 계장에 포함.	주택행정과 용지계장 직무대리를 명함.
회계과 지방행정 사무관 김성태	도봉구 지방행정 사무관 이후직
총무과 외전계장에 포함.	시설관리과 유모도로계장에 포함.
감사담당관 지방행정 사무관 손상은	도봉구 지방행정 사무관 정태복
인사과 보임 2 계장에 포함	경리과 판재계장에 포함.
회계과 지방행정 사무관 이상익	성북구 지방행정 사무관 박준기
행정과 행정계장에 포함.	양정과 식생활개선계장에 포함.
운수 1 과 지방행정 사무관 박희중	총무과 지방행정 사무관 양창모
새마을지도과 새마을지도계장에 포함.	총무과 서무계장에 포함.
양정과 지방행정 사무관 권오륙	상정과 지방행정 사무관 정재완
운수 1 과 운수행정계장에 포함	총무과 차량계장에 포함.
경리과 지방행정 사무관 이병규	총무과 지방행정 사무관 허완
회계과 제약계장에 포함.	감사담당관 감사 4 계장에 포함.
업무과 지방행정 사무관 안종관	운영과 지방행정 사무관 김병선
회계과 지출계장에 포함.	업무과 과징계장에 포함.
감사담당관 지방행정 사무관 박정길	동대문구 지방행정 사무관 조완희
보건행정과 위생계장에 포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보건행정과 지방행정 사무관 김영준	동대문구 지방행정 사무관 채홍식
감사담당관 감사 2 계장에 포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성 북 구 지방행정 사무관	윤 각	중 로 구 지방행정 사무관	최 동 조
중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병원 근무를 명함.	
성 동 구 지방행정 사무관	조 영 준	성 북 구 지방행정 사무관	김 영 후
중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보건소 민원봉사실장에 보함.	
시설관리과 지방행정 사무관	조 삼 섭	중 구 지방행정 사무관	박 은 서
중구 근무를 명함.		소녀직업보도소소장 직무를 명함.	
중 로 구 지방행정 사무관	김 완 규	금 수 과 지방토목 과	조 남 주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도로시설과 도로제장에 보함.	
중 구 지방행정 사무관	이 성 준	사 실 과 지방토목 과	설 전 성
성북구 근무를 명함.		도로보수과 시설보수제장에 보함.	
관 계 과 지방행정 사무관	김 운 태	도로시설과 지방토목 과	고 송 서
성북구 근무를 명함.		급수과 누수방지제장에 보함.	
주택건설 사업소	김 경 호	급 수 과 지방토목 과	전 기 태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급수과 배수제장에 보함.	
중 구 지방행정 사무관	김 동 훈	도로보수과 지방토목 과	김 두 영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시설과 공무1제장에 보함.	
은명출장소 지방행정 사무관	김 희 수	성 동 구 토목기과	황 부 성
관악구 근무를 명함.		관 악 구 근무를 명함.	
영 등 포 구 지방행정 사무관	유 갑 선	관 악 구 지방토목 과	정 필 현
은명출장소 근무를 명함.		성 동 구 근무를 명함.	
서 대 문 구 지방행정 사무관	신 병 순	지 하 철 본 부 지방토목 과	김 학 제
주택건설사업소 근무를 명함.		도시정비과 도시정비제장에 보함.	
관 악 구 지방행정 사무관	윤 두 영		
지하철본부 근무를 명함.			

<p>마포구 서기관 이규현 민방위국장 직무 서대문구 건설관리국장 직무 대리를 명함.</p> <p>서대문구 서기관 정종윤 민방위국장 직무 마포구 민방위국장에 보함.</p> <p>도시행정과 지방행정 사무관 황철민 서대문구 민방위국장 직무대리를 명함.</p>	<p>주택건설 지방건축 김현국 사업소 기과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p> <p>영선과 지방건축 김춘식 기과 영선과장 직무대리를 명함.</p> <p>관악구 지방건축 안충희 기과 주택건설사업소 공사2과장 직무 대리를 명함.</p>
<p>새마을지도과 서기관 이용선 국가공무원법 제 78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의거 전체에 처함.</p>	<p>정명란 지방건축기과 시보에 임함. 5호봉을 급함. 건설행정과 (종합설계실) 근무를 명함.</p>
<p>중구 서기관 장세환 국가공무원법 제 78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의거 전체에 처함.</p>	<p>정정현 지방수의회원 시보에 임함. 어린이대공원 근무를 명함.</p>
<p>은명출장소 지적지원 조경은 국가공무원법 제 73 조 2 제 1 항 3 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p>	<p>송인희 지방보건지원보 시보 (병리)에 임함. 동대문구보건소 근무를 명함.</p>
<p>○ 1976.3.19</p> <p>영선과 지방토목정 박원태 기과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p> <p>주택건설 지방건축 김태완 사업소 기과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p>	<p>김희숙 지방보건지원보 시보 (병리)에 임함. 용산구보건소 근무를 명함.</p> <p>이관일 지방보건지원보 시보 (행정)에 임함. 용신구 보건소 근무를 명함.</p>

<p>하재용 지방지척지원보시보에 임함. 중로구 근무를 명함</p> <p>박현규 지방토목지원보시보에 임함. 중구 근무를 명함.</p>	<p>정종구 지방토목지원보시보에 임함. 중구 근무를 명함.</p> <p>배예숙 지방간호지원보 시보에 임함.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p> <p>권순희 지방간호지원보 시보에 임함. 정신병원 근무를 명함.</p>
<p>서울특별시장</p>	